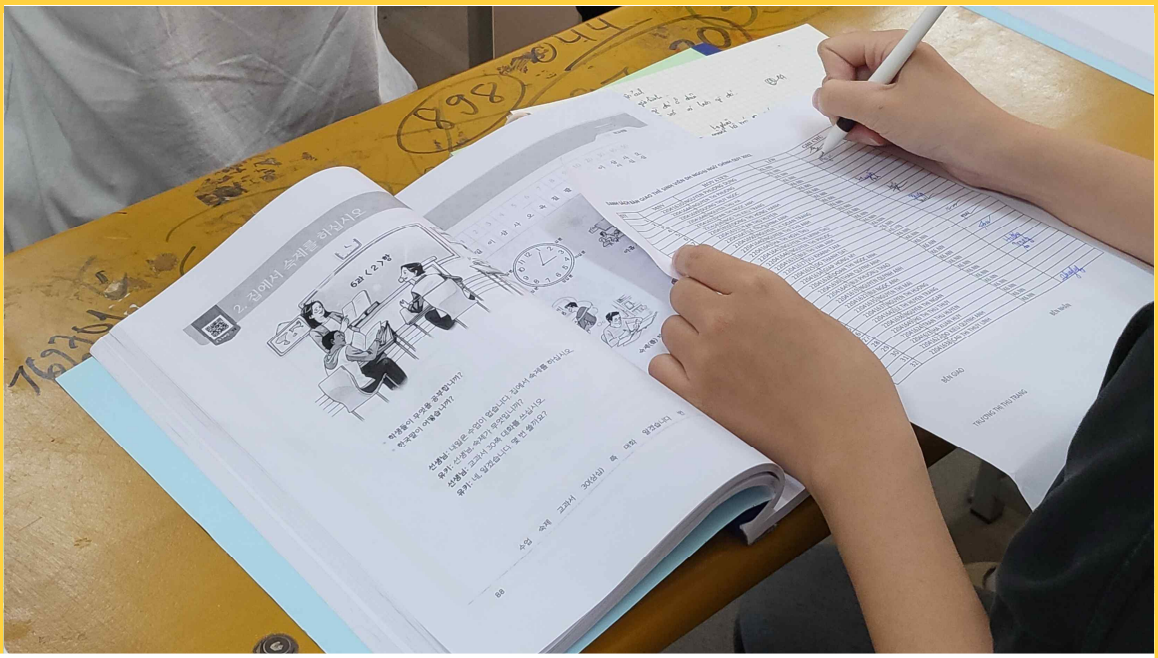

웹진 서강동연 vol. 16. 2023

한-아세안 상생과 번영을 위한 사회문화 지식기반 구축

전 세계적으로 인적교류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다문화”와 “포용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지원 서비스 사업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더불어 기존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과 재정착난민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대거 이주한 예멘 난민에 대한 대우와 재정착지원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의 난민법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학술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웹진 서강동연 16]은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며 한국의 “다문화”와 “포용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우선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다문화 가족과 장기체류 베트남인들을 위한 언어교육의 실태와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 내의 이주민에 대한 포용성 증진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산업법원이 내린 말레이시아 내의 난민들의 평등권과 노동권 분쟁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며 한국의 난민재정착제도에 대해 재고해 본다.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할 난민법에 대한 개선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진이 공저한 〈키워드 동남아〉에 대한 전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의 시각에서 풀어본 서평을 실었다. 책을 읽는 독자의 평가는 각기 다르지만 날로 증대되는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에 기반해야 한다는 바람은 비슷하다.

SIEAS SO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NRF 한국연구재단

목 차

01

1

한국의 베트남 다문화가족 포용을 위한 언어 교육

백용훈 단국대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조교수

02

13

한국의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혼혈아동 교육 및 교육지원 현황

김정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

목 차

03

28

〈키워드 동남아〉 서평

서정인 고려대 아세안 센터 연구위원 (전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01

한국의 베트남 다문화가족 포용을 위한 언어 교육

백용훈 단국대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조교수

한국에서 다문화가족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인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조화 및 포용을 위한 정책 방안이 강조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한국-베트남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확대에 주목하고, 베트남 다문화가족 등 장기체류 인구 증가에 주목하여 언어 교육을 통한 포용성 증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국-베트남 관계 격상과 장기체류 인구의 증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 및 심화되고 있다. 2022년 한국과 베트남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2023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여 보반트엉(Vo Van Th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부이타잉선(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부장관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행동계획은 ▲외교·안보 협력, ▲경제, 무역·투자, 개발 및 농업협력,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후변화, 천연자원 및 인프라 협력, ▲노동, 보건 및 교육 협력, ▲문화, 관광 및 인적교류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외교부, 2023/06/23). 해양치안 역량 강화 및 방한 협력 확대 등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하여 양국 간 무역·투자 증대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베트남 교류 증진을 위한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 장학생 초청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최경운, 2023).

〈사진 1〉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더욱 공고히 발전해 나갈 것”

출처: 대한민국대통령실 (2023/06/23)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인적 교류의 급성장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 2019년에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429만 명에 이르렀고 사업, 공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의 수는 62만 4,64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지만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22.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 중 한국 방문객 수가 가장 많다(곽성일 외, 2021).

더욱 중요한 점은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적 교류의 경우 단기체류뿐만 아니라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특히 정주 목적의 베트남 출신 이주민 증가 역시 대폭 확대되어왔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베트남 출신 장기체류 인구는 2009년 대비 약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포함)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베트남 다문화가족 인구는 코로나19 시기에 감소했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추세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출신 국적별 혼인 비중을 살펴보면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혹은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30.4%로 가장 많고 중국이 20.3%, 태국이 8.3% 순으로 많았다.

〈표 1〉 베트남 출신 단기 및 장기체류 인구 추이

	2006	2009	2016	2019
단기체류	2,541	4,765	11,615	37,184
장기체류*	52,157	86,166	137,769	187,334
- 국민의 배우자 (결혼이민자)	14,820	30,169	38,866	41,772

*장기체류: 유학, 연수,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06년, 2009년, 2016년, 2019년

다문화가족 포용을 위한 사회통합과 언어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영주 등을 포함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사회통합 및 수용의 주요 대상이 된다. 증가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 예를 들면 차별적 배제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등이 제기되어왔다. 언어적인 장벽과 소통 여부는 이주민과 자국민들 간의 관계 형성에서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변수정 외, 2021: 37, 75, 276).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요 관심사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이주민 개인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중언어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정서적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정책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정희원, 2013: 89).

2010년에 수립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과 2012년에 수립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정책 과제를 비교하면 일정한 차이가 있다. 2010년에는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교육과 의사소통 지원 강화" 등에 치중한 반면에 2012년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을 위하여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 교육을 통한 동화를 강조하는 방식에서부터 이주민의 모국어와 모국 문화에 관한 이해를 보다 중시하는 교육의 필요성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을,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방과 후 학교 등의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용,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아동·청소년 이용기관에 강사파견 등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다문화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 결혼이민자 가정의 학부모 중 이중언어에 능통하고 우수한 사람을 아동복지교사로 채용, 이중언어 강사를 전국으로 확대 양성 및 운영하는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등을 강조했다.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에는 유입 → 자립 → 성장 → 기여의 미래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여 이민배경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아·학령기 등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왔다. 특히,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원어민 보조교사나 이중언어 강사로 확대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단순히 지원받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이주민을 사회발전의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중언어 구사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단일언어 구사자에 비해 상대방의 요구에 인지적으로 대응한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콜린 베이커, 2014: 230-234).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자녀가 원활하게 언어적 소통을 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자녀 교육과 자녀들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정은, 2007). 특히 외국에서 출생 후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학교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중언어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책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엄마나라 말 배우기'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주여성 자녀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족의 가치와 역할은 물론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는 데 있다.

〈사진 2〉 "다문화 가정 '엄마 나라 말 배우기' 확산"

출처: 남도일보 (2023/03/14)

한국 내 베트남어 교육 수요 및 현황

증가하는 베트남 출신 이주민에 따른 사회통합 및 언어 교육의 수요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베트남어 교육 수요는 주로 경제적, 산업적 교류 증진 속에서 필요한 언어적 소통에 집중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 교류의 증가, 특히 장기체류 중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균형적이고 쌍방향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은 지체되어왔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한국 내 베트남어 공교육기관과 인력풀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교의 경우 베트남어를 전공 혹은 학과 수준으로 교육하는 곳은 단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산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이상 다섯 곳뿐이다. 이외에도 2021년 기준 베트남어 교과목이 개설된 학교를 살펴보면, 서울대, 부경대, 한남대, 영남대 등에서 교양과정 혹은 베트남지역학연계전공에서 베트남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박명기, 2022). 시원스쿨 등 사설 교육기관이 증가하여 일반 국민들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유투브(YouTube)와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시공간적인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주로 입문과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대다수이며 시사베트남어와 영화로 보는 베트남어 등 일부 특정 주제의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진학 시기별로 베트남어 교육의 체계가 분절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일부 다루어지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하기보다는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언어 및 문화 관련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베트남어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입시 문제 풀이 위주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비해 체계적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전공 교과목의 경우 1~4학년 과정에서 학과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 초급, 중급, 고급 베트남어, 비즈니스 베트남어, 베트남어문학 등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하지만, 비전공자의 경우 취업시장에서는 OPIc[1] 혹은 FLEX[2] 점수로 베트남어 언어 구사 능력을 파악한다. 산업분야 수요에 따른 교과목 예를 들면, 신산업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통번역 및 비즈니스 회화 등과 같은 수업을 필요로 하지만 대학별로 입문과 초급의 수준을 넘어서는 커리큘럼 구성과 이러한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 교육기관 이외에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2016.8.2.)을 통해 2단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2022~2026)이 진행되고 있으며 베트남어의 경우 단국대·청운대 특수외국어 컨소시엄 사업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 두 전문교육기관이 전문인재 양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확대, 교육기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1)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 1:1 인터뷰 평가인 OPI에 최대한 가깝게 만든 인터넷 기반의 응시자 친화형 외국어 말하기 평가.
2) FLEX는 국가가 공인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공인민간자격시험.

〈표 2〉 진학 시기별 언어 교육 목적 및 내용과 제공 기관

대상	언어 교육 목적 및 내용	교육 제공 기관	
초등학생	한국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 대상 언어 교육(엄마나라 언어 배우기 등)	방과후 프로그램,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 외국어 교육 전문 기관
중학생			
고등학생	입시(제2외국어)	EBS, 사설교육기관	
대학생	전공자 – 산업체 진로취업을 위한 베트남어 비전공자 - OPIC, FLEX 등	베트남어/베트남학 전공 개설 대학교, 교양 및 연계전공, 사설교육기관	
산업체 종사자 및 공무원 등	무역, 관광, 보건, 비즈니스 등	대학교, 특강, 사설교육기관, 베트남어 전문강사	

출처: 필자 작성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문화 분야 협력 수요는 기업의 투자 및 진출 속도보다 지체되어 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류의 경우 문화 부문에 편중되어 있지만 역사적이고 문화적 유사성을 강조해온 탓에 서로 다른 사회적 생활상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어와 태권도와 K-POP 등 한국 문화 알리기가 대다수인데, 이와 병행하여 한국 내 장기체류 베트남 이주민의 증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사회통합과 포용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결론

이 글은 한국의 베트남 다문화가족 포용을 위한 언어 교육을 주제로 다문화가족 포용을 위한 사회통합과 언어 교육 정책 그리고 한국 내 베트남어 교육 수요 및 현황에 대한 불일치를 정리한 것이다. 2010년 초에 다문화가족 포용을 위한 정책의 전환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 내 베트남어 교육을 위한 목적과 수요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제외하면 소통을 위한 언어교육보다는 입시, 진로취업을 위한 학습에 국한되어 있으며 초, 중등학생 대상 언어 교육 역시 일부 지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적 수요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른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베트남어 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이중언어 강사의 부족에 관한 언론 기사에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론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약 14만 명인데, 다문화 언어 강자 수는 4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2.2%인 402명은 이주민 여성이고, 외국어 교육 전문가 인력은 13.1%인 64명에 불과했다(한국경제신문, 2019/10/16). 강사 인력 풀 확보는 물론이고 다문화 언어 및 이중언어 강사에 대한 교육 및 교재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각 시·도 교육청이 9개 다문화언어강사양성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시행해왔지만 강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교재 개발 그리고 다문화 혹은 이중언어 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의 체계적인 양성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곽성일, 백용훈, 이한우, Le Quốc Phương, Vũ Mạnh Lợi, Nguyễn Thị Thanh Huyền. 2021.「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89~95쪽.

대한민국대통령실.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더욱 공고히 발전해 나갈 것(2023/06/23)"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PBVJNSDx.

박명기. 2022. "'동남아언어캠프' 3년만에 위상 우뚝...전북대-부산외대 '찰떡궁합'." 아세안익스프레스 7월 26일, https://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7861.

박정은. 2007.『다문화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 이주가정과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일지사. 94~111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06년, 2009년, 2016년, 2019년.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

변수정·정희선·김기태·이창원·김희주. 2021.「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21-37).

외교부. 2023/06/23. 보도자료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주요 내용."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830.

정희원. 2013.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와 언어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제23권 제4호(2013년 겨울).

천창환. 2023. "다문화 가정 '엄마 나라 말 배우기' 확산." 남도일보 3월 14일,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468#:~:text=%EB%B6%80%EB%AA%A8%EC%99%80%20%EC%9E%90%EB%85%80%EA%B0%80%20%ED%95%A8%EA%BB%98,%EA%B3%B5%EC%9C%A0%ED%95%98%EB%8A%94%20%ED%94%84%EB%A1%9C%EA%B7%B8%EB%9E%A8%EB%8F%84%20%EC%9E%88%EB%8B%A4.

최경운. 2023. "한국, 베트남에 40억달러 유상원조... 희토류 협력 강화한다." 조선일보 6월 23일,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6/23/3MHE5U3K2NFXNPK46PIFMMWGV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콜린 베이커. 연준흠·김주은 옮김. 2014.『이중언어의 기초와 교육』. 박이정.

통계청 보도자료(2022.11.3.).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경제신문. 2019/10/16. “다문화 학생 13만7천명인데…다문화 언어 강사는 489명.”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1681 49Y.

02

난민의 일할 권리: 말레이시아의 산업법원은 어떻게 난민들의 노동권을 인정하게 되었는가?

김정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

1. 서론

올해 2월 말레이시아의 산업법원은 불법해고와 임금 체불건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난민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세계의 인권 및 난민단체와 국제기구를 놀라게 했다. 난민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노동자의 법적 체류 지위와 상관없이 자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사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난민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없다. 말레이시아의 1957년 연방헌법과 1959-1963년 이민법은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로부터 인정받은 난민을 포함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모든 비호신청자와 난민들을 공식적으로 불법체류자(Pendatang Asing Tanpa Izin, PATI)로 규정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이민법은 '불법이민자' 또는 '불법체류자'의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난민은 6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집행관들은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Equal Rights Trust 2014: 31).

난민의 노동권을 둘러싼 말레이시아의 법제도와 정책이행의 불일치는 어디서부터 기원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의 산업법원은 난민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을까? 본고는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레이시아 현지조사 중 원고인 난민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한 시민단체로부터 입수한 말레이시아 산업법원의 판결문 및 난민의 노동권을 둘러싼 말레이시아 산업법원의 지난 판례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동남아의 난민정책에 비추어 한국사회는 노동권을 포함한 난민의 권리들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는지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사진 1〉 2023년 2월 난민의 노동권을 인정한 말레이시아 산업법원의 판결문의 첫 장

INDUSTRIAL COURT OF MALAYSIA
CASE NO: 6/4-1464/21

BETWEEN

SAFWAN ZAID MOHAMMED AL OTHMANI

AND

MY MILK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SDN. BHD.

AWARD NO.: 2422 YEAR 2022

Before	: **Y.A TUAN IZNAN BIN ISHAK** - Chairman
Venue	: Mahkamah Perusahaan Kuala Lumpur
Date of Reference	: 08.04.2021
Mention Dates	: 29.06.2021, 19.08.2021, 09.09.2021, 25.10.2021, 07.12.2021
Trial Date	: 08.02.2022
Representatives	: Ms Angeline Low Yu Yen and Ms Sya Kit Yin Valerie Messrs Lu-Yen Counsel for the Claimant Mr. Murad Abdul Aziz Company Representative

출처: 저자 제공

2. 사건의 전개[1)]

사건의 원고는 예멘 출신의 난민으로[2)] 2011년에 고국을 떠나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여 망명을 신청했다. 이후 UNHCR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아 제3국에 재정착이 허락 될 때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며 본인과 가족의 생계 부양을 위해 식당과 같은 일자리를 전전했다. 그러다 2017년 예멘 출신의 사장이 운영하는 'MY 우유 생산 및 유통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해 2020년 2월까지 약 3년간 우유공장에서 유통 업무를 맡아 근무했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로 인해 시장 내 우유의 소비량이 급감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동제한명령을 발효하자, 2020년 4월 우유회사 사장은 왓츠앱(Whatsapp)을 통해 아메드에게 "노동정지명령(Work Stop Order)"을 보냈다.

피고인 우유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아메드는 매달 1,800말레이시아 링겟(2023년 6월 기준 한화 약 50만원)을 임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그는 1,610링겟을 매월 임금으로 받았으며 이마저도 2020년 3월부터는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우유를 유통할 때 사용하던 자동차의 대여비에 대해서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함에 따라 추가의 체불 비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몇 차례 내용증명과 편지를 보내 회사상태와 미지불 임금에 대해 문의했으나 우유회사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으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아메드를 다시 복직시켜주기로 한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다.

1) 말레이시아 산업법원 판결문 Case No. 6/4-1464/21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2)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원고인 난민의 실명이 공개되었음으로, 원고를 실명의 약자인 아메드(Ahmed)로 지칭함.

원고인 아메드는 회사에 7일내 답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했으나 회사가 응답하지 않자 노동부를 찾아갔다. 그러나 애초에 불법적인 체류 지위로 인해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아메드는 노동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으나 같은 이유로 도움 요청을 거절당했다. 그러던 중 아메드는 자신이 속해있던 난민주도조직의 리더로부터 말레이시아 내의 난민권리옹호 단체인 Asylum Access을 소개받았고 그들의 도움으로 산업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아메드는 Asylum Access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노동부, 경찰 등 모든 곳을 찾아 다녔지만, 제가 난민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울하고 슬퍼지기 시작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난민주도조직] 커뮤니티 리더는 저에게 인권을 거부당하는 난민을 돕는 Asylum Access에 대해 말해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3)]

Asylum Access는 원고인 난민 아메드가 피고인 우유회사를 대상으로 불법해고 및 미지급 급여와 관련하여 33,000링겟(한화 약 9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산업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문제는 아메드가 2022년 초에 유럽에 재정착하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는 아메드가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청구 취소 판결을 내릴까 걱정했다. 그러나 판사는 원고가 화상회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약 1년간 지속된 재판 끝에 2023년 2월 최종적으로 우유회사가 아메드에게 피해보상으로 33,000 링겟을 지불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3) Asylum Access 2023

3. 말레이시아의 산업법원은 어떻게 난민들의 노동권을 인정하게 되었는가?

말레이시아는 약 170년간의 영국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영국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 전통의 법체계 기반을 가지고 있다(법제처, 2009). 보통법 체계에서는 앞서 일어난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이 다음 사례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쳐 판례법(case law)으로도 불리며, "유사한 사건에 적용되는 일관적인 원칙이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특징을 가진다(법제처, n.d.). 이러한 법체계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의 난민의 노동권은 산업법원을 통해 꾸준히 판례, 또는 선례(precedent)를 만들어오며 발전해 온 특징을 보인다.

첫째, 1950년과 1995년 판례는 산업법원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난민의 노동권과 관련한 분쟁들을 산업법원에서 다뤄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1950년 델리의 바라트 은행 노동분쟁 관련 판례[4]에 따르면 산업법원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 시, 기존 근로계약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권리와 특권을 분쟁의 각 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법원은 산업 평화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고려되는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각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4) 말레이시아 산업법원 판결문 Bharat Bank Limited Delhi v Employees of Bharat Bank Ltd Delhi AIR 1950 SC 304 참고.

1995년 샤리캇 홍 리옹 보증 해고사건 관련 판례[5]는 난민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산업법원에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2022년 아메드가 취업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산업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산업법원은 노동부나 경찰과는 달리, 난민인 아메드의 청구를 심리할 권한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고용법(Employment Act 1955)과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67)에 근거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내의 불법, 합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제대로 된 이유를 제시 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해고된 경우, 산업법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1995년 재판의 판결문에 따르면:

> "[말레이시아] 산업법원의 주요하고 유일한 기능은 (1) 사측이 해고사유로 주장한 사항이 근로자가 실제로 행한 것이며, (2) 그러한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6]

이렇듯 말레이시아의 노동법은 난민의 일할 권리(right to work)를 직접적이며 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류 지위에 관계없이 난민들이 '부당한 해고(unjust dismissal)'를 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right to file a claim)를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난민들의 법적 고용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난민을 한 개인이자 인간, 근로자로 간주하여 권리를 요구할 권리(right to pursue rights)를 인정한 것이다.

---

5) 말레이시아 산업법원 판결문 Wong Yuen Hock v Syarikat Hong Leong Assurance Sdn Bhd & Anor [1995] 3 CLJ 344 참고.

6) 앞의 문서, 762쪽.

둘째, 1981년과 1996년 판례는 난민도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근거하여 노동 및 근로와 관련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선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특히, 1981년 아순타 병원 노동분쟁 관련 재판[7]에서는 난민이 법적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는데, 당시 난민의 변호인은 노사관계법 제2조 '노동자'의 정의를 인용하며 노동자의 범위는 '모든 사람(any person)'을 포함하고, 이는 난민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인권위원회법 제2항은 연방헌법의 제11부에 "인권을 천부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연방헌법 제5조 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8] 이를 근거로 난민도 인간으로서, 근로자의 권리 및 법으로 보장되는 인권을 가진다는 점을 판결문에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1996년 탄 텍 셍 노동 분쟁 관련 판례[9]는 더 나아가 연방헌법 제5조 1항에 언급된 '생명(life)'에 대해 포괄적인 해석을 제공하며, 1981년 판례에 이어 난민 노동자도 일반시민과 같이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96년 판결문에는 연방헌법이 명시한 생명의 뜻이 인간의 단순한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필수적인 모든 측면과 삶의 질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담겨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난민들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인 노동권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

7) 말레이시아 산업법원 판결문 Dr. A Dutt v Assunta Hospital [1981] 1 MLJ 304 참조.
8) Federal Constitution Article 5(1): "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his life or personal liberty save in accordance with law."
9) 말레이시아 산업법원 판결문 Tan Tek Seng v Suruhanjaya Perkhidmatan Pendidikan & Anor [1996] 1 MLJ 261 참고.

특히 난민들의 노동권과 관련한 판례들에서 난민에게 인권의 보편적 가치들을 적용한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연방헌법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핵심조항이 존재하는 반면 인권 보호의 대상을 ***시민***과 ***비시민***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권리를 차등 보장하는 상충되는 내용 또한 존재하는데, 어떠한 법조항을 사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가는 오롯이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헌법 제8조(1)항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보호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편, 제8조(2)항은 “종교, 인종, 출신, 태생지, 성별과 관련하여 시민은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5조 4항은 모든 시민이 경찰에 체포 후, 부당한 지체 없이 24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회부될 것을 명하고 있으나, 비시민권자는 최대 14일 간 구금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난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들의 무작위 신분확인,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연방헌법 제9조 추방 및 이동의 자유권, 제10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권, 제12조 교육권에서도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헌법은 자국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의 평등권은 인정하는 반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Equal Rights Trust 2014: 25). 그리고 이는 곧 판사가 어떠한 법조항을 해당 사건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난민의 노동권이 제한될 수도 보호가 확대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난민에 대한 평등권을 강조하면 난민의 노동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난민이 비시민권자임이 강조되면 난민의 노동권 보호는 약화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보통법 체계를 가진 말레이시아에서 판례를 통해 평등권을 강조하고 난민의 노동권에 대한 해석을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근거하여 꾸준히 확대해 온 것은, 뒤에 이은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말레이시아 내 난민의 노동권을 발전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앞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평등권과 노동권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산업법원의 판결들은 난민과 같이 2등급 이주 노동자로 분류되는 소외된 집단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적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4. 말레이시아의 산업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2022년을 기준으로 유엔난민기구 말레이시아 지부에 등록된 난민과 비호신청자는 186,986명이지만, 이는 구금시설에 구류되어있거나 구금된 상태로 비호신청을 한 자, 무국적자들은 제외한 대폭 축소된 수치라고 알려져 있다(UNHCR Statistics, 2023). 말레이시아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비당사국이며 공식적인 난민보호제도의 부재로 난민을 위한 캠프가 없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 거주중인 모든 난민들은 제3국으로 재정착 될 때까지 장기간 도심 지역사회에 수용된다(Wake and Cheung, 2016: 2).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심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60퍼센트의 난민들이 쿠알라룸푸르, 클랑밸리, 페낭, 조호르, 말라카와 같은 도시에 거주 중이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심난민들은 대부분 난민 장기화 사태에 놓여있다. 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로힝야 인구의 4분의 1이 말레이시아에 20년 이상 거주 중이며, 가장 길게는 31년 이상을 거주 중인 이도 있었다(Wake and Cheung, 2016: 2).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에 거주중인 난민들이 제3국으로 재정착하기까지 상당한 대기기간이 발생하게 되면서,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난민보호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대외 공식 석상에서 말레이시아에 내에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는 거주자들을 '난민'으로 일컬으며, 사실상 말레이시아 내에 난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2021년 쿠데타 이후 급속히 증가한 미얀마 난민에 대한 우려가 외교 석상에서도 종종 언급되었다. 2023년 3월 31일, 말레이시아와 중국 양국의 전략 파트너십 10주년을 맞이하여 베이징을 방문한 안와르 총리는 시진핑을 만난 자리에서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 큰 근심을 표하며, 말레이시아가 "현재 약 20만 명 이상의 미얀마 출신 난민을 수용 중"이라고 강조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2023). 2월 9일 태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도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미얀마 난민을 수용중이나, 작은 국가로서(a small country)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이 지역기구로서 일관되고 일치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와르 총리는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브루네이,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하는 동안 각국의 총리들과 미얀마 이슈를 논의하며, 동남아 국가들은 지역 내 난민위기 문제해결을 위해 난민의 수를 줄이거나 난민보호를 위한 부담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Prime Minister's Office of Malaysia 2023; Hunt 2022).

이러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내 시민단체 및 사회과학 연구소들은 난민들이 공식적으로 노동시장 편입됐을 경우 기대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말레이시아에서 난민들의 노동권이 합법화되면 정부의 연간 세입은 2024년까지 매년 약 140억 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난민의 노동권 합법화는 이들의 소득 및 소비증가로 이어져 자영업자 및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말레이시아 GDP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의 합법화로 난민들 또한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해 상당수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고용주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난민들의 공식적인 노동 시장으로의 유입은 난민뿐만 아니라 수용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인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난민들에게 교육권까지 주어지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Bedi and Azizan 2019; Todd et al. 2019).

난민의 공식적인 노동시장 유입으로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말레이시아의 노동력 부족문제 또한 산업법원의 결정에 역할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난민기구 말레이시아 지부에 따르면 난민들의 대부분은 3D(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직종으로 여겨지는 농업, 건설업, 청소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난민들이 현재 말레이시아 지역사회에서 자국민이 일하기 꺼려하는 건설, 공장, 팜유농업 등과 같은 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국가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법원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의식하고 재판을 통해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사진 2〉 난민 G의 월급 명세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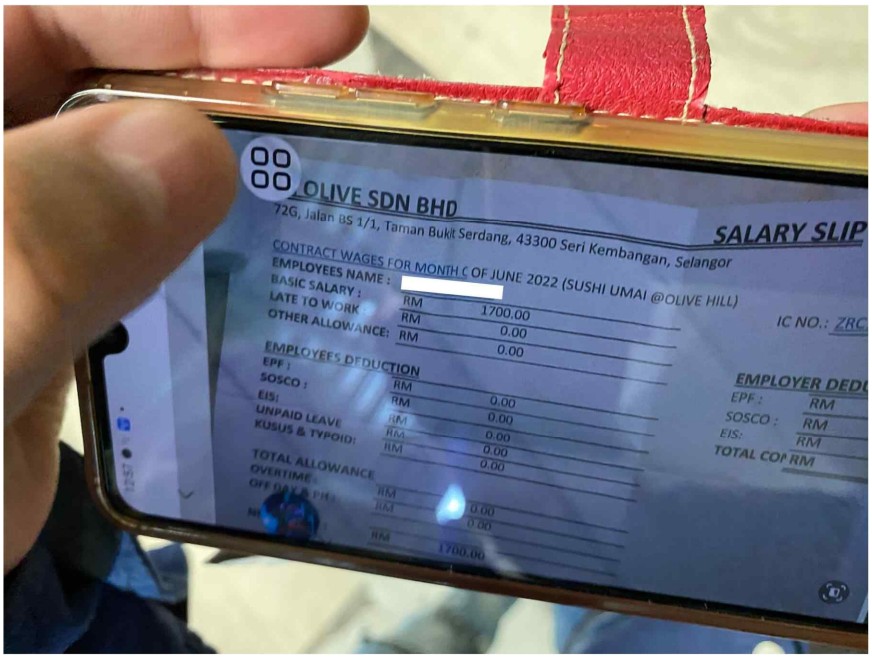

난민 G의 월급 명세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난 난민 G는 시내 스시 가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주일 6일을 일하고 1700링겟(한화 약 47만 5천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출처: 저자 제공

5.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의 노동 경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 개발 및 개선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난민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 재정착하는 모든 난민들은 말레이시아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난민보호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15년부터 재정착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미얀마와 태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메솟 난민캠프에서 거주하던 미얀마 카렌족을 부평지역에 정착시켰으며, 2018년부터는 다양한 민족의 말레이시아 도심난민들을 김포지역에 정착시키고 있다(채보근, 2021: 2). 재정착을 위한 난민선발지역이 태국의 난민캠프에서 말레이시아로 변경된 이유는 난민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자유시장경제에서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말레이시아의 도시환경이 한국의 지역사회와 닮은 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도심에 거주 중인 상당한 수의 난민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채널을 활용하여 노동권과 교육권을 행사하는 등, 일정부분 자립성을 성취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에 재정착하는 난민들의 효과적인 사회통합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장기간 수용되어있던 말레이시아 내의 난민 가버넌스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래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 난민의 노동권에 대한 정책들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한국은 최근 심한 저출산율에 '지방소멸' 도시 목록이 정부에 의해 발표가 될 정도로 인구감소 및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제 한국도 단일민족 국가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담론이 부상되자,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켰고 이민청 출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사회는 이주노동자 및 난민의 노동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필자는 최근 경기도 시흥에 재정착한 미얀마 출신의 20대 여성 난민 J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할 당시 난민주도조직의 회계를 도맡아 일을 한 경험이 있어 수학과 영어에 능했다. 그런데 한국에 재정착 하면서 법무부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화장품 회사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J씨는 이 과정에서 종사 가능한 직업군에 대한 선택에 제한이 많아 자신이 가진 장점을 살리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쉬워했다. 적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때문에 한국에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 또한 아쉬워했다. 하지만 J씨의 상황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인도적 체류자들의 처지에 비하면 훨씬 나은 것이다. 2018년에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도에 입국했던 대다수의 예멘인들은 난민 지위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는 매년 갱신이 필요한 체류지위로서 단순노무직종에만 종사가 가능하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모국을 떠났으나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자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민주주의 선진국인 한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도 막상 처지는 나아진 것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물론 한국에도 유엔난민기구를 포함하여 여러 법률 및 시민단체들이 난민의 노동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수준 차원에서 난민과 인도적체류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 말레이시아의 산업법원이 보여주었던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보편적 인권가치의 적용과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우리사회에도 적용이 되면 어떨까. 최소한 한국정부에서 이들의 체류지위는 합법임으로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된 이들의 삶과 일자리는 말레이시아의 경험보다 더 나은 것이기를 소망해본다.

참고문헌

채보근. 2021.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2021-08.

법제처. 2009. “말레이시아의 법체계와 입법과정.”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888 (검색일: 2023. 6. 24.)

법제처. n.d. “영국의 법률체계” 법령정보관리원. https://world.moleg.go.kr/cms/commonDown.do?DLD_CFM_NO=57POX69EJR9LQESO6KB3&FL_SEQ=40738 (검색일: 2023. 6. 24.)

Asylum Access. 2023. “Malaysia: Court defends refugee worker rights in landmark ruling.” https://asylumaccess.org/malaysia-court-defends-refugee-worker-rights-in-landmark-ruling (검색일: 2023. 6. 23.)

Bedi, Stories Rashvinjeet S., and Azizan, Hariati. 2019. “Grant refugees in Malaysia the right to work.” *The Star* June 23.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19/06/23/grant-refugees-in-malaysia-the-right-to-work/ (검색일: 2023.01.14.)

Equal Rights Trust. 2014. Equal Only In Name: The Human Rightsof Stateless Rohingya in Malaysia.

Hunt, Luke. 2022. “Challenging Malaysia’s Moral Authority on Myanmar.” *The Diplomat* Ocboter 2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2023. “Historic Meeting Between Yab Prime Minister Dato’ Seri Anwar Bin Ibrahim and His Excellency President Xi Jinping.” March 31.

Prime Minister’s Office of Malaysia. 2023. “Take Concerted Efforts to Resolve Rohingya Crisis, PM Anwar Urges ASEAN.” News, February 9.

Todd, Laurence., Amirullah, Adli., and Shin, Wan Ya. 2019. “The Economic Impact of Granting Refugees in Malaysia the Right to Work.” *IDEAS*, Policy Ideas No. 6.

UNHCR Statistics.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download/?url=efEY6a (검색일: 2023. 1. 14.)

Wake, Caitlin. and Tania Cheung. 2016. “Livelihood Strategies of Rohingya Refugees in Malaysia: ‘We Want to Live in Dignity.”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03

〈키워드 동남아〉[1] 서평

서정인 고려대 아세안 센터 연구위원 (전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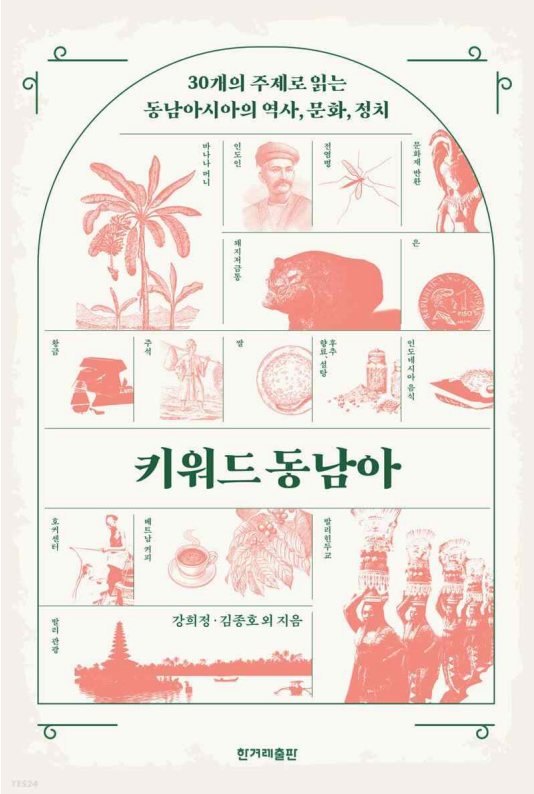

〈키워드 동남아〉(2022년)를 단숨에 읽었다. 또 서평을 위해 자투리 시간에 몇 번 더 읽었다. 30개의 주제로 읽는 동남아시아의 역사, 문화, 정치다. 각 분야별 주제들을 딱딱하지 않고 쉽게 풀어 썼다. 일간지 연재 글이라서 그런지 글이 임팩트도 있다. 신간을 접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감이 있다. 그러다 보면 빨리 읽으려 해 독서의 기쁨이 반감된다. 이 책은 주제 자체가 딱딱하지 않고, 한 번에 꼭 다 읽어 내려갈 필요도 없다. 시간 날 때 옆에 두고 천천히 읽어도 무방한 책이다.

1) 강희정, 김종호 외, 『키워드 동남아』, 한겨레출판, 2022.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동남아를 제일 잘 표현한다는 '다양성 속 통일(unity in diversity)'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동남아시아 역사, 문화, 정치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면서도 그 지역적 정체성이 잘 드러나 이 지역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했다. 요새 국내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동남아 도우미를 활용하자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에 동남아 문화를 이해하는 길라잡이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신윤환 서강대 명예교수의 〈동남아 문화 산책: 신윤환의 동남아 깊게 일기〉(2008) 이후에 읽을만한 동남아 관련 교양서다. 신윤환 교수의 서강대 후배 동료들과 제자가 의기투합해 쓴 책이다. 선배와 후배의 책을 같이 읽어보면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양쪽을 모두 아는 나야 이렇게 재미 삼아 비교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인 후배들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엄청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다.

1장의 역사편은 제국주의의 유산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바나나 머니, 인도인, 전염병, 문화재 반환, 은, 황금, 주석 테마를 일본,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과거 동남아를 식민 지배한 제국이나 영향을 미친 국가들과 관련해 적고 있다.

특히 작년 말에 멕시코 대사를 마치고 돌아온 필자에게는 '은: 100원 동전이 둥근 이유' 편이 눈길을 끌었다. 16-19 세기 사이 250여 년간 멕시코 아카풀코와 필리핀 마닐라 사이에서 일어난 갤리온 무역의 핵심 결제 수단이었던 멕시코산 은화가 어떻게 페루산 은과 중국 도자기, 비단, 차와 함께 마닐라를 거쳐 푸젠(복건성)까지 갔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 동전이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 동전 주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지면에 제약도 있었겠지만 복잡다단하지만 동남아 이해에 매우 중요한 근대 동남아의 식민지 역사 관련 주제, 특히 동남아인과 외국인들이 쓴 문학을 통해 본 동남아 역사를 추가했으면 더 흥미로웠을지 싶다.

2장 문화편은 동남아시아의 다양성과 혼종성에 관한 주제들로 이루어졌다. 쌀, 후추•향료•설탕, 인도네시아 음식, 호커 센터, 베트남 커피, 발리 관광, 발리 힌두교, 종교, 페라나칸 혼례, 전통의상, 베트남 대중 음악, 베트남 영화, 인형극 등을 다룬다. 필자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을 새록새록 떠올리게하는 테마들이 많아 흡입력이 높은 장이었다. 일종의 감정이입을 하며 즐겁게 읽었다. 인도네시아 른당 소고기 요리(우리의 찜 요리 비슷하며 CNN 선정 세계 1위 요리)며, 베트남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그랬다. 특히 멕시코에 함께 근무했던 특히 남(Nam) 전 주아세안 베트남 대사가 수시로 준 베트남 일회용 커피를 즐겨 마신 추억이 떠올랐다.

동남아산 커피는 네덜란드가 유럽 향료 수요가 주춤할 때 브라질, 콜롬비아, 자메이카 등 중남미 커피보다 먼저 세계 시장에 나온 환금작물로서, 설탕, 사탕수수와 더불어 식민지 정부의 효자였다. 동남아산 커피 대부분은 일회용 커피에 많이 사용되는 로부스타 종이지만, 베트남 중부의 달랏과 같이 1500 미터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는 고급 아라비카 커피가 난다. 베트남 뿐 아니라 태국 왕실 프로젝트로 개발한 도이창 커피도 일품이다. 태국 방문 때마다 사 오곤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부암동 우리 집 근처에 도이창 커피숍이 생겨 젊은이들로 붐빈다. 인도네시아에는 대표 커피인 루왁이 있다. 사향고양이 배설물 중 커피빈을 갈아 만든 커피인데 비싸다. 그러다 보니 고양이를 가둬 놓고 억지로 커피를 먹여 루왁 커피를 만든다는 얘기가 돌자, 동물 학대 논란으로 루왁 커피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생겼다. 난 이 커피를 여러 번 마셔 보았지만 여느 커피와 다른지 잘 모르겠다. 요새 인도네시아에선 아노말리 등 가성비 좋은 다른 커피들도 많이 개발되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출장을 갔을 때 플라자 인도네시아라는 대형 몰에 방문했는데, 스타벅스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산 전문 커피숍에는 현지인은 말할 것 없이 외국인들도 많았다. 스타벅스의 반값이었다.

이 책 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남아는 과일 천국이다. 과일의 왕인 두리안과 계절의 여왕인 망고스틴을 비롯해 바나나, 망고, 코코넛, 파파야는 지천으로 널렸다. 내가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근무할 때 1불의 행복이라고 느끼며 즐겨 먹은 냉동고에서 차게 한 코코넛은 상하의 동남아를 잊게 해주는 것이었다. 난 특히 두리안을 좋아하는데 두리안은 천국의 맛, 지옥의 향기라고도 불린다. 여간 맛있는 게 아니다. 아세안 대사 때 재미 삼아 동남아 대사 간 싸움을 붙이면, 태국산 두리안이 최고라든지, 말레이시아산도 좋다느니, 미얀마산이 섬유질이 더 많다느니 등 얘기를 하면서 각국이 자존심을 걸고 자기네 두리안이 최고라고 했었다. 그 정도로 두리안은 동남아를 대표한다.

마지막 3장 정치편의 제목은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기술'이다. 밀레니얼 연대, 타이 왕실, 타이식 민주주의, 왕립 개발 프로젝트, 강소국, Bebas dan Aktif(다이내믹 인도네시아), 다자외교 등의 주제를 다룬다. 타이, 미얀마, 싱가폴, 인도네시아 4개국 관련 사항만 있어서 1, 2장에 비해 적어 좀 아쉬웠지만 내용은 알차다. 최소한 베트남 정도는 더 추가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시내 교수의 미얀마-타이 '쌍둥이 독재자'에 맞서는 청년들, 타이 왕실 및 타이식 민주주의의 글 들은 만약 태국어로 소개되었으면 현 교수가 입국을 거부당할지도 모를 진솔한 얘기를 담고 있다. 특히 그의 글은 2014년 쿠데타 이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실시된 총선 이후의 태국 정국을 생각하게 된다. 총선에서 나타난 밀레니얼 세대의 표심에 힘입어 태국 40대 기수론의 피타 총리 후보가 이끈 전진당이 친탁신 정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되었다. 그의 글을 읽고 나서 집권 세력에 유리한 헌법 때문에 선거에 이기고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 태국 정국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좌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잔상이 남았다.

주아세안 대표부 선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동남아 현장을 경험한 서강대 배기현 교수의 강소국(싱가폴), 다이내믹 인도네시아 외교 및 다자외교(ASEAN의 외교 양식과 교훈)도 일목요연하게 잘 쓴 글이다. 특히 다자외교 글에서 그는 아세안 외교의 3대 특징을 잘 제시했다. 첫째가 아세안이 강대국들을 모두 불러들여 동심원적 다자외교의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여러 개의 태양과 항해의 자유로 표현했다. 둘째는 동남아 국가들은 위계적인 국제관계에서 리더 국가의 권위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그는 권력 보다는 권위를 중요시 하다고 강조한다. 아세안 성공의 열쇠인 대국 인도네시아의 권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마지막 특징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 규칙은 아세안이 만든다는 것이다. EU 방식이 아닌 협의와 합의를 중시하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의미한다.

이 책이 아쉬운 부분은 역사, 문화, 정치 편으로만 한정한 점이다. 과거 유럽 열강의 동남아 식민지는 물론 지금도 외국 투자가 동남아로 쏠리는 게 하는 것은 경제다. 동남아 경제가 역사, 문화, 정치에 얽혀 상호 영향을 주는 핵심 분야임을 인식하면 경제가 쏙 빠진 게 아쉽다. 간단하게나마 몇 개의 경제 관련 테마들을 소개했으면 그야말로 동남아를 이해하는 종합 선물 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후속편이 기대된다.

연구소 소식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2023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정치외교 세미나 〈월간 인도네시아〉

김창범, 외교현장에서 본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인도네시아 관계 (2023.05.12.)

김경훈,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발 전략과 국가 자본주의 (2023.06.09.)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하리 인도네시아 (2023.05.19.)

서강대 동아연구소-인천대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신냉전' 질서와 아시아의 다양성 (2023.06.02.)

교류협정체결

Center for Khmer Studies(CKS)와 MOU 체결 (2023.05.23.)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 사회과학대학(Faculty of Social Science)과 MOU 체결 (2023.06.14.)

인물로 보는 동남아시아사

정정훈, 인도네시아 외교의 힘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2023.05.17.)

하정민, 부유층 '샬로트 사르'는 어쩌다 무자비한 '폴 포트'가 되었나 (2023.06.0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SCOPUS 등재지 『TRaNS』

2023년 5월호 - 11권 1호 발간 (2023.05.17.)

교수&연구원 동정

정정훈, '노란 코코넛 마을: 공동체와 문화관광의 방향성' 동아대 관광경영학과 강연 (2023.05.10.)

현시내, 『Indigenizing the Cold War: The Border Patrol Police and Nation-Building in Thailand』 비대면 강연 (2023.05.17.)

*기사 원문 및 자세한 내용은 동아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는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사업 지원을 받아,
“한-아세안 상생과 번영을 위한 사회문화 지식 기반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과 관련한 사회문화 이슈를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슈페이퍼 〈서강동연〉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웹진 서강동연을 통해서 제공하는 모든 기고문과 자료의 저작권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 있습니다. 따라서 웹진 서강동연이 발간하는
글에 대한 무단 게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웹진 서강동연 – Vol. 16. 2023

발행인 **강희정**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장

발행처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다산관 322호
Tel 02-705-8227
Fax 02-718-4353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IEAS), Sogang University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다산관 322호
http://sieas.sogang.ac.kr I TEL 02-705-8227 I FAX 02-718-4353 I E-mail: sieas@sogang.ac.kr